|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2001년 10월 27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1년 12월 31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한다.)**제1장 총 칙****제1조** 직업병 위해의 예방, 통제 및 제거, 직업병의 방지와 치료, 근로자의 건강 및 관련된 권익 보호,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활동에 적용한다.본 법에서 “직업병”이라 일컫는 것은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경제조직 등 고용단위의 근로자가 직업 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 유해물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직업병의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노동보장행정부문과 협의하여 규정 및 조정하여 공포한다. **제3조**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는 예방 유지를 위주로 하고, 방지와 치료의 결합 방침 하에 고용단위의 책임, 행정기관 감독, 업종자율, 노동자 참여와 사회감독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분류관리와 종합처리를 실행한다.**제4조** 근로자는 법에 의거하여 직업위생 보호권리를 향유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업무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근로자가 직업위생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공회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여,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단위는 유관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규정 제도를 제정 및 수정하며, 공회조직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제5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책임제를 구축, 완비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직업병 방지와 치료 수준을 제고한다. 본 단위에서 발생한 직업병 위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조** 고용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다. **제7조** 고용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공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국무원 및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부문은 공상보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법에 따른 공상보험의 대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및 근로자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법, 신규설비, 신소재의 연구, 개발, 보급 및 응용을 장려 및 지원하여 직업병의 메커니즘과 발생 규율에 대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효율적인 직업병 방지와 치료 기술, 공법, 자재를 적극 채택하고, 직업병 위해가 심한 기술, 공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도태시킨다. 국가는 직업병 의료회복기구의 건설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9조** 국가는 직업위생 감독제도를 실시한다.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위생행정부분,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본 법과 국무원이 확정한 직책을 따르고, 전국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유관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위생행정부문,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관련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위생행정부문, 노동보장행정부문(이하,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은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여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진다. **제10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규획을 제정하여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직하여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를 일괄 책임, 지도, 조직, 협조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업무 체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완벽화한다. 직업위생 돌발사건 대처 업무를 일괄 지도, 지휘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 능력을 강화하여 건설과 서비스 체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 책임제를 구축, 개선, 이행한다.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는 본 법을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고,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제11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은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지식을 보급시켜야 한다. 고용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관념을 증강시켜 근로자의 직업건강 의식과 근로자 스스로의 보호의식 및 직업위생 보호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12조**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유관 국가직업 위생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조직, 제정하여 공포한다.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직업위생표준과 직업병 방지와 치료정책을 제정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중점 직업병 모니터링과 전문조사를 조직하고 전개하여 직업건강 위험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현황에 대한 통계와 조사분석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13조** 모든 단위나 개인도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과 고발 권리를 가진다. 유관부문은 유관 적발과 고발접수를 받은 후 즉시 처리를 해야 한다.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성과가 뚜렷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제2장 사전예방****제14조** 고용단위는 법률, 법규 조건에 따라 국가직업위생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직업병 예방조치를 이행하여 근원부터 직업병 위해를 통제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15조** 직업병 위해를 일으키는 고용단위의 설립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설립조건 외에도 해당 사업장은 아래의 직업위생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직업병 위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직업병 위해 방지와 보호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생산배치가 합리적이고, 유해 작업과 무해작업의 분리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4)탈의실, 욕실, 임산부 휴게실 등의 위생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설비, 공구, 용구 등의 시설이 근로자의 생리, 심리건강 보호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6)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근로자 건강 보호에 관한 기타 요구**제16조** 국가는 직업병 위해사항 신고제도를 구축한다. 직업병 목록에 열거된 직업병의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고용단위의 사업장은 즉시 소재지역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위해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직업병 위해요소 분류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협의하여 제정 및 조정하여 공포한다. 직업병 위해사항 신고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제정한다. **제17조** 신축, 증축, 개축 건설프로젝트와 기술개조, 기술도입 프로젝트(이하 건설프로젝트)에서 직업병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설단위는 실행검토 단계에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을 하고,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예비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예비평가보고서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유관부문은 해당 건설프로젝트를 비준할 수 없다.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서는 건설프로젝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병 위해 요소 및 사업장과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고, 위해유형과 직업병 방지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해 분류관리방법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제정한다. **제18조** 건설프로젝트의 직업병 퇴치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은 건설프로젝트 공사 예산에 산입되어야 하고 주요 공사와 함께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건설프로젝트의 퇴치시설 설계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조건에 부합되어야 비로소 시공할 수 있다.건설프로젝트의 준공 검수 전, 건설단위는 직업병 위해의 억제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준공 검수를 할 때, 그 직업병 퇴치시설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검수를 거쳐 합격을 받은 후 비로소 정식 생산과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제19조**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 직업병 위해 통제효과 평가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또는 설치 구역의 시급(市级)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부여한 자격인증을 받은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가 진행한다.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가 실시한 평가는 객관적이며 사실적이어야 한다. **제20조** 국가는 방사성 및 독성/위험이 높은 분진 등의 작업에 대해 특수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3장 근로과정의 예방 및 관리****제21조** 고용단위는 아래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1)직업위생관리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전임 또는 겸직의 직업위생 관리자를 배치하며, 본 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를 책임지게 한다.(2)직업병 방지 및 치료계획과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3)직업위생관리제도와 조작규정을 마련하고 완비한다. (4)직업위생 문건과 근로자 건강보호 문건을 마련하고, 완비한다. (5)사업장의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완비한다. (6)직업병 위해 사고의 응급 구조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완비한다.**제22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필요한 자금투입을 보장하고, 강제로 점거, 횡령해서는 안되며, 자금투입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 고용단위는 유효한 직업병 퇴치시설을 채택하고, 근로자에게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직업병 퇴치 용품은 직업병 방지와 치료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및 근로자 건강 보호에 유리한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를 우선 채택하여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기술, 공법, 설비, 자재를 점차 대체해야 한다. **제25조** 직업병 위해가 발생한 고용단위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고란을 설치하여 유관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조작규정제도, 조작규정 및 직업병 위해 사고 응급구조 조치와 사업장의 직업 위해요소 검사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심각한 직업병 위해가 발생한 사업 부서는 눈에 띄는 곳에 경고 표시와 중문 경고 설명을 비치해야 한다. 경고 설명에는 직업병 위해를 일으키는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구조조치 등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26조** 급성 직업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독, 유해 사업장에 대해 고용단위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현장 구급용품, 세척설비, 응급비상통로와 필요한 비상탈출지역을 마련해야 한다. 방사성 사업장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수, 저장에 대해 고용단위는 보호시설과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방사선을 접촉하는 작업 직원에게 개인 측량기를 지급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직업병 방지와 치료설비, 응급구조 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에 대해 고용단위는 항상 보호와 검사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그 성능과 효과를 검사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하며 임의대로 제거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없다.**제27조** 고용단위는 전문직원이 책임지는 직업병 위해요소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운영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해 직업병 위해요소 검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평가 결과는 고용단위의 직업위생문건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직업병 위해요소 검사, 평가는 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또는 설치지역의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부여한 자격인증을 받은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가 실시한다.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의 검사와 평가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사업장 직업병 위해요소가 국가직업위생 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고용단위는 즉시 상응한 처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전히 국가 직업위생표준과 위생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직업병 위해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직업병 위해요소를 처리하여 국가 직업위생표준과 위생조건에 부합될 때, 비로소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28조**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는 법에 의해 직업병 위해요소 검사, 평가 업무에 종사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29조** 고용단위에 직업병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중문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비의 눈에 띄는 곳에 경고표지와 중문 경고 설명을 배치해야 한다. 경고설명에는 설비의 성능,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안전조작과 보호주의사항, 직업병 퇴치 및 응급구조조치 등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30조** 고용단위에 직업병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품,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중문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상품의 특성, 주요성분, 존재하는 유해요소, 발생 가능한 위해결과, 안전사용 주의사항, 직업병 방지와 치료 및 응급구조조치 등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상품포장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표지와 중문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위의 자재를 보존하는 장소에는 규정된 위치에 위험물품 표지 또는 방사성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국내에서 직업병 위해와 관련된 화학자재를 처음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사용단위 또는 수입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유관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해당 화학재료의 독성감정과 유관부문의 등록신청 또는 수입비준을 통과한 문건 등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장치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물품의 수입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1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국가에서 사용금지를 명령한 직업병 위해가 발생 가능한 설비 또는 자재를 생산, 경영, 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직업병 위해가 발생 가능한 작업을 직업병 방지와 치료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직업병 방지와 치료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직업병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접수할 수 없다. **제33조** 고용단위는 채택한 기술, 공법, 자재에 대해 그것이 발생시키는 직업병 위해를 알아야 하고, 직업병 위해가 있는 기술, 공법, 설비, 자재의 위해를 숨기고 채택한 경우, 초래된 직업병 위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34조** 고용단위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포함, 이하 동일)을 체결할 때에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및 결과, 직업병 보호 조치와 대우 등을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근로계약에 숨기거나 속일 수 없다고 명기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업무단위 또는 업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 서명한 근로계약에 기록되지 않은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고용단위는 앞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원 근로계약의 유관 조항을 협상하여 변경한다. 고용단위가 앞의 두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작업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35조** 고용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위생관리직원은 직업위생 훈련을 받아,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고, 법에 의하여 당해 단위에 직업병 방지와 치료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배치 전에 직업위생훈련과 재직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직업위생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직업위생지식을 보급하여 근로자가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규정 및 조작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근로자들이 직업병 보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정확히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근로자는 직업위생 유관지식을 학습 및 습득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 의식을 제고하여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규정과 조작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직업병 보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정확하게 사용, 보호해야 하고, 직업병 위해의 사고 우환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앞의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단위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6조**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단위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위생행정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 배치 전, 근무기간 중, 직장을 그만 둔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사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고용단위는 일자리 배치 전, 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직업금기 상태의 근로자를 금지된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 중에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건강을 해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조정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 직업건강검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직업건강검사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비준한 의료위생기구가 부담한다. **제37조** 고용단위는 근로자를 위해 직업건강검사문건을 만들어야 하고, 규정된 기간에 따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직업건강 감독 문건은 근로자의 근무기록, 직업병 위해접촉경력, 직업건강검사결과 및 직업병 진료 등 유관 개인건강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근로자가 고용단위를 그만 둘 경우, 본인의 직업건강검사서류 사본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고용단위는 사실대로 무상으로 제공하며, 제공된 사본에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38조** 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용단위는 응급조치와 통제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유관부문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생행정부문은 의료구조 업무를 조직하여 훌륭히 이행해야 한다. 급성 직업병 위해를 당하거나 당할 가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단위는 즉시 응급치료하고, 건강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실시해야 한다. 소요 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제39조** 고용단위는 미성년 근로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여성근로자를 본인과 태아, 영아에 위해가 있는 작업에 배치할 수 없다. **제40조** 근로자는 아래의 직업위생보호 권리를 향유한다. (1)직업위생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2)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료, 회복 등 직업병 방지와 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3)사업장에서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업병 위해요소, 위해결과, 취해야 할 직업병 보호조치를 알 권리(4)고용단위에 직업병 방지와 치료 조건에 부합되는 직업병 보호시설 및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 제공과 작업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5)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및 생명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고발, 고소를 제기할 권리(6)직업병 퇴치조치가 없는 작업의 실시를 요구하는 규정위반 지휘와 강요를 거부할 권리 (7)고용단위의 직업위생업무의 민주적인 관리에 참여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고용단위는 근로자가 앞 조항의 권리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가 법에 근거하여 정당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체결된 근로계약을 해제, 중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제41조** 공회조직은 고용단위가 직업위생 홍보교육과 훈련을 시행해 나가도록 독촉 및 협조해야 하며, 고용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에 근거한 대표 근로자는 고용단위와 노동안전위생 전문항목의 집체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단위와 근로자 보고에 따른 유관 직업병 방지와 치료 문제에 대해 협조와 독촉을 하여 해결한다.공회조직은 고용단위가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심각한 직업병 위해가 나타난 경우,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부의 유관부문에 강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다. 직업병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처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고용단위에 근로자들을 위험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단위는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42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조건에 따라 직업병 위해의 예방과 처리, 사업장 위생검사, 건강검사와 직업위생훈련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생산원가 가운데 사실에 근거하여 지출을 기재해야 한다. **제43조**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고용단위가 실시한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리조치 현황에 대한 감독조사를 강화하고, 법에 근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직업병 진단과 직업병 환자의 보장****제44조** 의료위생기구는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은 사회에 본 행정구역 내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의 명단을 공포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는 아래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의료기구 공인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2)직업병 진단 시행에 상응하는 의료위생기술 직원이 있어야 한다. (3)직업병 진단 시행에 상응하는 의료기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완벽화된 직업병 진단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는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제45조** 근로자는 고용단위의 소재지, 본인의 호적 소재지 또는 경상 거주지에서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 직업병 진단 표준과 직업병 진단, 감정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제정한다. 직업병 장애등급의 감정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문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47조** 직업병 진단은 아래 사항을 종합하여 분석해야 한다. (1)환자의 근무기록(2)직업병 위해 접촉경력과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요소 현황 (3)임상시험 및 보조검사 결과 등 직업병 위해요소와 환자 임상시험 간에 필연적 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직업병으로 진단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는 직업병 진단 시, 직업병 진단 자격을 취득한 3명 이상의 공인 의사를 조직하여 집단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증명서는 진단에 참여한 의사가 공동으로 서명해야 하고,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의 심의를 거쳐 날인해야 한다. **제48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진단, 감정에 필요한 노동자 근무기록과 직업병 위해접촉경력, 사업장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결과 등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고용단위가 제공한 상술한 자료를 감독하고 독촉해야 한다. 근로자와 유관기구 역시 직업병 진단, 감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감정기구는 사업장소의 직업병 위해요소 현황을 알아보고자 할 때,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분에 제기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10일 이내 현장조사를 조직할 수 있다. 고용단위는 이를 거절 및 방해를 할 수 없다. **제49조** 직업병 진단, 감정 과정 중에서 고용단위가 사업장소의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진단, 감정기구는 근로자의 임상실험, 보조검사 결과와 근로자의 근무기록, 직업병 위해접촉경헙을 결합시켜야 한다. 근로자의 자술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가 제공한 일상감독검사 정보 등을 참고하여 직업병 진단과 감정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단위에 제공한 사업장의 직업 위해요소 모니터링 결과 등 자료에 이의가 있거나 근로자의 고용단위 해산, 파산으로 인해 고용단위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진단, 감정기구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가 존재하는 자료 또는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요소 현황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 유관부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0조** 직업병 진단, 감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기록, 직업병 위해접촉경험을 확인할 때, 당사자가 노동관계, 직무, 근무처 또는 근무시간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현지의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이를 심사해야 하며, 3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스스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는 고용단위가 장악하여 관리하는 중재주장과 관련한 증거를 제공할 방법이 없을 경우, 중재재판소는 고용단위가 지정한 기한 내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용단위가 중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직업병 진단, 감정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기간에 근로자의 치료비용은 직업병 대우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제51조** 고용단위와 의료위생기구가 직업병 환자 또는 疑似 직업병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소재지 위생행정부문과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병으로 확진된 경우, 고용단위는 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부문은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52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직업병 통계보고의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규정에 따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53조** 당사자가 직업병 진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진단을 내린 의료위생기구 소재지의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직업병 진단 분쟁은 관계지역의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당사자가 관계지역의 시급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감정 결론에 불복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에 감정을 재신청 할 수 있다. **제54조**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는 유관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은 유관 전문가 집단을 구축하고, 직업병 분쟁에 대해 진단감정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유관 위생행정부문에 위탁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무작위로 택하는 방식을 통해 진단감정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를 확정한다.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는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에서 공포한 직업병 진단표준과 직업병 진단, 감정방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감정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직업병 진단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과 감정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제55조**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단 감정을 실시해야 하며,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당사자와 사적으로 접촉을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받을 없다.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회피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유관 안건심사 시, 직업병 감정이 요구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관 전문가집단 중에서 감정에 참가하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제56조** 의료위생기구는 疑似 직업병 환자 발견 시, 근로자 본인에게 알려주고, 고용단위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疑似 직업병 환자에 대해 즉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疑似 직업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의학적인 관찰기간 중에는 그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疑似 직업병 환자의 진단, 의학적인 관찰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제57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환자가 법에 의해 국가 규정의 직업병 대우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의 치료, 건강회복 및 정기검사를 안배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지속적으로 기존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직업병 환자에 대해 근무지를 떠나도록 하고 타당하게 배치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당한 작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제58조** 직업병 환자의 진료, 치료와 회복 비용, 그리고 장애가 남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유관 산재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제59조** 직업병 환자는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을 향유하는 것 외에 민사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용단위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제60조** 근로자가 직업병의 진단을 받았으나, 고용단위가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의료와 생활보장은 해당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제61조** 직업병 환자가 업무단위를 변경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던 대우는 불변한다. 고용단위가 분리,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위해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환자를 타당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62조** 고용단위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직업병 환자는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의료구조와 생활 등의 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기타 조치를 취하고 앞 조항에 따른 직업병 환자가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제5장 감독검사****제6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은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국가직업위생 표준과 위생요구에 따라 직책에 따라 직업병 방지와 치료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제64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감독검사 직책 이행 시,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검사 받는 단위와 직업병 위해 현장으로의 진입, 상황파악, 조사증거 채취(2)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채집한 견본의 조사 및 복제 (3)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한 위법행위 중지명령 **제65조** 직업병 위해 사고를 발견하거나 위해 상태가 직업병 위해 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질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아래 임시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직업병 위해사고를 초래하는 작업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 (2)직업병 위해사고를 초래하거나 직업병 위해사고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재료와 설비의 봉인(3)직업병 위해 사고현장의 통제 직업병 위해사고 또는 위해상태가 유효하게 통제된 후에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즉시 통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66조** 직업위생감독집행직원은 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감독집행 증거물을 제시해야 한다. 직업위생감독집행직원은 본분에 충실하고,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며, 법 집행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고용단위와 관련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제67조** 직업위생감독집행직원은 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할 경우, 검사 받는 단위는 검사를 접수하고, 협력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다.**제68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및 직업위생감독집행직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에 아래의행위를 할 수 없다. (1)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건설사업의 관련증명문서와 품질증명문서를 발급하거나 비준을 하는 행위(2)기 취득한 유관증명문서에 대한 감독검사직책의 불이행 행위(3)고용단위에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고, 직업병 위해 사고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 즉시 법에 의하여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4)본 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제69조** 직업위생감독집행직원은 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거쳐야 한다.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은 조직 구축을 강화하고, 직업위생감독집행직원의 정치, 업무자질을 제고하며, 본 법과 기타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내부감독 제도를 구축, 완비한다. 해당 업무 직원이 법률, 법규를 집행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6장 법률 책임****제70조** 건설단위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1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건설중지와 폐쇄를 명령할 것을 제청한다.(1)규정에 의해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공을 한 경우(2)건설사업의 직업병 퇴치시설이 규정에 의한 주된 공사와 동시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3)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건설사업에서 직업병 퇴치시설 설계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국가직업위생표준 및 위생조건시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4)규정에 의해 직업병 퇴치시설에 대해 직업병 위해 통제효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검수를 거치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임의대로 사용에 투입한 경우**제7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사업장의 직업병 위해 원인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미보존, 상부에 미보고, 미발표 했을 경우 (2)본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3)규정에 의해 직업병 방지와 치료 유관 규정제도, 조작규정, 직업병 위해 사고 응급조치를 공포하지 않은 경우(4)규정에 의해 근로자 직업위생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직하지 않거나 근로자 개인의 직업병 퇴치에 대해 지도, 독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5)직업병 위해와 관련 있는 화학재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규정에 의한 독성감정자료 및 유관부문의 등록 또는 수입 비준 문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제72조** 고용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즉시 또는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2)전문직원이 책임지는 직업병 위해 요소의 일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인 검측을 할 수 없는 경우(3)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 시, 근로자에게 직업병 위해의 실제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4)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지 않거나 직업건강검사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검사결과를 노동자한테 서면형식으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5)본 법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고용단위를 그만둘 때 직업건강검사 문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73조** 고용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제청한다. (1)사업장의 직업병 위해 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을 초과한 경우(2)직업병 퇴치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미제공, 제공한 직업병 퇴치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이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3)직업병 퇴치시설과 응급구조시설 및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유지·보호, 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운영과 사용 상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 요소에 대한 검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5)사업장의 직업병 위해 요소가 처리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국가 직업위생표준과 위생조건에 도달하지 못할 때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6)규정에 따라 직업병 환자와 疑似 직업병 환자의 진료 실시를 안배하지 않은 경우(7)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응급구조와 통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의해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8)규정에 따라 심각한 직업병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업무 단위에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표시와 중문 경고설명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9)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를 거절한 경우(10)직업건강감독보호의 문건, 사업장에서의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평가결과 등 유관 자료를 은폐, 위조, 왜곡, 훼손하거나 직업병 진단, 감정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11)규정에 따른 직업병 진단 및 감정비용과 직업병 환자의 의료, 생활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제74조** 고용단위에 발생 가능한 설비, 자재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중문 설명서를 미제공 또는 경고 표시와 중문 경고 설명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고용단위와 의료위생기구가 규정에 따라 직업병과 疑似 직업병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유관 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날조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을 해임한다. **제76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기한 내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 규정의 권한에 따라 폐쇄를 명령하도록 제청한다. (1)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기술, 공법, 설비, 자재를 은폐하여 채용한 경우(2)본 단위의 직업위생의 실제 상황을 은폐한 경우(3)급성으로 직업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독, 유해 사업장과 방사성 사업장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수, 저장이 본 법 제26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4)국가에서 명확히 사용금지를 명령한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설비 또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5)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직업병 방호보호 조건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직업병 보호조건이 없는 단위 또는 개인이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받아들인 경우(6)직업병 퇴치시설 또는 응급구조설비를 임의대로 제거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킨 경우(7)직업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 직업에 적합하지 않는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또는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여성근로자를 직업병 위해에 접촉하는 작업이나 금기작업에 배치한 경우(8)근로자들이 직업병 보호조치가 없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휘하거나 강제로 명령한 경우 **제77조** 국가에서 사용을 명확히 금지한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 있는 설비나 자재를 생산, 경영 또는 수입하는 경우,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78조** 고용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심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직업병 위해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 규정의 권한에 따라 폐쇄를 명령하도록 제청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 고용단위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직업병 위해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80조** 직업위생기술서비스 자격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료위생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위생행정부문이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즉시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천 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천 위안 미만인 경우,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81조** 직업위생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구와 직업건강검사,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위생행정부문이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즉시 위법행위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천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천 위안 미만인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원 인정 또는 비준기관은 그 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소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1)자격인증 또는 비준 범위를 초과하여 직업위생기술서비스 또는 직업건강검사와 직업병 진단에 종사한 경우(2)본 법 규정에 따라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허위의 증명문서를 발급한 경우**제82조**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직업병 진단 분쟁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령할 경우, 경고를 주고 수령한 재물을 몰수한다. 령한o록3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가 담당한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 구성인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이 설립한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한다. **제83조** 위생행정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규정에 따라 직업병과 직업병 위해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직상급 행정부문은 개정을 명령하고 비판하며 경고를 준다. 허위보고, 은폐보고를 한 경우에는 단위 책임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의거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84조** 본 법 제17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관부문이 건설프로젝트를 임의대로 비준하거나 시공허가를 내주었을 경우, 해당 부문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감찰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잘못을 기록하고, 해고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85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를 하는 중 본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본 행정구역에서 중대한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하고 해고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이 본 법규정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본 법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 또는 직급을 낮추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직업병 위해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86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사책임을 규명한다. **제7장 부 칙****제87조**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직업병 위해”는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병의 여러 가지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병 위해 요소는 직업 활동 중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한 화학, 물리, 생물 요소 및 작업 중 발생하는 기타 직업 유해 요소를 포함한다. “직업금기”란 근로자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직업병 위해 요소에 접촉할 때 일반 직업군중에 비해 보다 쉽게 직업병 위해를 받고 직업병에 걸리거나 원래 있던 질병의 상황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작업종사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건강에 대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수생리 또는 병리 상태를 말한다.**제88조** 본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고용단위 이외의 단위에서 직업병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업병 방지와 치료활동은 본 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노무파견의 고용단위는 본 법 규정의 고용단위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이 법의 집행을 참고하는 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 **제89조** 의료기구의 방사성 직업병 위해 통제의 감독관리에 대해서는 위생행정부문이 본 법의 규정을 따라 실시한다. **제90조** 본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２００１年１０月２７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通过.根据２０１１年１２月３１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的决定》修正）**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预防、控制和消除职业病危害，防治职业病，保护劳动者健康及其相关权益，促进经济社会发展，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职业病防治活动。 本法所称职业病，是指企业、事业单位和个体经济组织等用人单位的劳动者在职业活动中，因接触粉尘、放射性物质和其他有毒、有害因素而引起的疾病。 职业病的分类和目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劳动保障行政部门制定、调整并公布。 **第三条** 职业病防治工作坚持预防为主、防治结合的方针，建立用人单位负责、行政机关监管、行业自律、职工参与和社会监督的机制，实行分类管理、综合治理。 **第四条** 劳动者依法享有职业卫生保护的权利。 用人单位应当为劳动者创造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工作环境和条件，并采取措施保障劳动者获得职业卫生保护。 工会组织依法对职业病防治工作进行监督，维护劳动者的合法权益。用人单位制定或者修改有关职业病防治的规章制度，应当听取工会组织的意见。 **第五条** 用人单位应当建立、健全职业病防治责任制，加强对职业病防治的管理，提高职业病防治水平，对本单位产生的职业病危害承担责任。 **第六条** 用人单位的主要负责人对本单位的职业病防治工作全面负责。 **第七条** 用人单位必须依法参加工伤保险。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劳动保障行政部门应当加强对工伤保险的监督管理，确保劳动者依法享受工伤保险待遇。 **第八条** 国家鼓励和支持研制、开发、推广、应用有利于职业病防治和保护劳动者健康的新技术、新工艺、新设备、新材料，加强对职业病的机理和发生规律的基础研究，提高职业病防治科学技术水平；积极采用有效的职业病防治技术、工艺、设备、材料；限制使用或者淘汰职业病危害严重的技术、工艺、设备、材料。 国家鼓励和支持职业病医疗康复机构的建设。 **第九条** 国家实行职业卫生监督制度。 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卫生行政部门、劳动保障行政部门依照本法和国务院确定的职责，负责全国职业病防治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职业病防治的有关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卫生行政部门、劳动保障行政部门依据各自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职业病防治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职业病防治的有关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卫生行政部门、劳动保障行政部门（以下统称职业卫生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沟通，密切配合，按照各自职责分工，依法行使职权，承担责任。 **第十条** 国务院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职业病防治规划，将其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并组织实施。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统一负责、领导、组织、协调本行政区域的职业病防治工作，建立健全职业病防治工作体制、机制，统一领导、指挥职业卫生突发事件应对工作；加强职业病防治能力建设和服务体系建设，完善、落实职业病防治工作责任制。 乡、民族乡、镇的人民政府应当认真执行本法，支持职业卫生监督管理部门依法履行职责。 **第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职业卫生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对职业病防治的宣传教育，普及职业病防治的知识，增强用人单位的职业病防治观念，提高劳动者的职业健康意识、自我保护意识和行使职业卫生保护权利的能力。 **第十二条** 有关防治职业病的国家职业卫生标准，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组织制定并公布。 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组织开展重点职业病监测和专项调查，对职业健康风险进行评估，为制定职业卫生标准和职业病防治政策提供科学依据。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定期对本行政区域的职业病防治情况进行统计和调查分析。 **第十三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对违反本法的行为进行检举和控告。有关部门收到相关的检举和控告后，应当及时处理。 对防治职业病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第二章 前期预防** **第十四条** 用人单位应当依照法律、法规要求，严格遵守国家职业卫生标准，落实职业病预防措施，从源头上控制和消除职业病危害。 **第十五条** 产生职业病危害的用人单位的设立除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设立条件外，其工作场所还应当符合下列职业卫生要求： （一）职业病危害因素的强度或者浓度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 （二）有与职业病危害防护相适应的设施； （三）生产布局合理，符合有害与无害作业分开的原则； （四）有配套的更衣间、洗浴间、孕妇休息间等卫生设施； （五）设备、工具、用具等设施符合保护劳动者生理、心理健康的要求； （六）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卫生行政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关于保护劳动者健康的其他要求。 **第十六条** 国家建立职业病危害项目申报制度。 用人单位工作场所存在职业病目录所列职业病的危害因素的，应当及时、如实向所在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申报危害项目，接受监督。 职业病危害因素分类目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制定、调整并公布。职业病危害项目申报的具体办法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制定。 **第十七条** 新建、扩建、改建建设项目和技术改造、技术引进项目（以下统称建设项目）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建设单位在可行性论证阶段应当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交职业病危害预评价报告。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职业病危害预评价报告之日起三十日内，作出审核决定并书面通知建设单位。未提交预评价报告或者预评价报告未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审核同意的，有关部门不得批准该建设项目。 职业病危害预评价报告应当对建设项目可能产生的职业病危害因素及其对工作场所和劳动者健康的影响作出评价，确定危害类别和职业病防护措施。 建设项目职业病危害分类管理办法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制定。 **第十八条** 建设项目的职业病防护设施所需费用应当纳入建设项目工程预算，并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生产和使用。 职业病危害严重的建设项目的防护设施设计，应当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审查，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方可施工。 建设项目在竣工验收前，建设单位应当进行职业病危害控制效果评价。建设项目竣工验收时，其职业病防护设施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验收合格后，方可投入正式生产和使用。 **第十九条** 职业病危害预评价、职业病危害控制效果评价由依法设立的取得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或者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给予资质认可的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进行。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所作评价应当客观、真实。 **第二十条** 国家对从事放射性、高毒、高危粉尘等作业实行特殊管理。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制定。**第三章 劳动过程中的防护与管理** **第二十一条** 用人单位应当采取下列职业病防治管理措施： （一）设置或者指定职业卫生管理机构或者组织，配备专职或者兼职的职业卫生管理人员，负责本单位的职业病防治工作； （二）制定职业病防治计划和实施方案； （三）建立、健全职业卫生管理制度和操作规程； （四）建立、健全职业卫生档案和劳动者健康监护档案； （五）建立、健全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监测及评价制度； （六）建立、健全职业病危害事故应急救援预案。 **第二十二条** 用人单位应当保障职业病防治所需的资金投入，不得挤占、挪用，并对因资金投入不足导致的后果承担责任。 **第二十三条** 用人单位必须采用有效的职业病防护设施，并为劳动者提供个人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 用人单位为劳动者个人提供的职业病防护用品必须符合防治职业病的要求；不符合要求的，不得使用。 **第二十四条** 用人单位应当优先采用有利于防治职业病和保护劳动者健康的新技术、新工艺、新设备、新材料，逐步替代职业病危害严重的技术、工艺、设备、材料。 **第二十五条** 产生职业病危害的用人单位，应当在醒目位置设置公告栏，公布有关职业病防治的规章制度、操作规程、职业病危害事故应急救援措施和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 对产生严重职业病危害的作业岗位，应当在其醒目位置，设置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警示说明应当载明产生职业病危害的种类、后果、预防以及应急救治措施等内容。 **第二十六条** 对可能发生急性职业损伤的有毒、有害工作场所，用人单位应当设置报警装置，配置现场急救用品、冲洗设备、应急撤离通道和必要的泄险区。 对放射工作场所和放射性同位素的运输、贮存，用人单位必须配置防护设备和报警装置，保证接触放射线的工作人员佩戴个人剂量计。 对职业病防护设备、应急救援设施和个人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用人单位应当进行经常性的维护、检修，定期检测其性能和效果，确保其处于正常状态，不得擅自拆除或者停止使用。 **第二十七条** 用人单位应当实施由专人负责的职业病危害因素日常监测，并确保监测系统处于正常运行状态。 用人单位应当按照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规定，定期对工作场所进行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检测、评价结果存入用人单位职业卫生档案，定期向所在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报告并向劳动者公布。 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由依法设立的取得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或者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给予资质认可的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进行。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所作检测、评价应当客观、真实。 发现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时，用人单位应当立即采取相应治理措施，仍然达不到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必须停止存在职业病危害因素的作业；职业病危害因素经治理后，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方可重新作业。 **第二十八条** 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依法从事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工作，接受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监督检查。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履行监督职责。 **第二十九条** 向用人单位提供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设备的，应当提供中文说明书，并在设备的醒目位置设置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警示说明应当载明设备性能、可能产生的职业病危害、安全操作和维护注意事项、职业病防护以及应急救治措施等内容。 **第三十条** 向用人单位提供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化学品、放射性同位素和含有放射性物质的材料的，应当提供中文说明书。说明书应当载明产品特性、主要成份、存在的有害因素、可能产生的危害后果、安全使用注意事项、职业病防护以及应急救治措施等内容。产品包装应当有醒目的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贮存上述材料的场所应当在规定的部位设置危险物品标识或者放射性警示标识。 国内首次使用或者首次进口与职业病危害有关的化学材料，使用单位或者进口单位按照国家规定经国务院有关部门批准后，应当向国务院卫生行政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报送该化学材料的毒性鉴定以及经有关部门登记注册或者批准进口的文件等资料。 进口放射性同位素、射线装置和含有放射性物质的物品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第三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生产、经营、进口和使用国家明令禁止使用的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设备或者材料。 **第三十二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将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转移给不具备职业病防护条件的单位和个人。不具备职业病防护条件的单位和个人不得接受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 **第三十三条** 用人单位对采用的技术、工艺、设备、材料，应当知悉其产生的职业病危害，对有职业病危害的技术、工艺、设备、材料隐瞒其危害而采用的，对所造成的职业病危害后果承担责任。 **第三十四条** 用人单位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含聘用合同，下同）时，应当将工作过程中可能产生的职业病危害及其后果、职业病防护措施和待遇等如实告知劳动者，并在劳动合同中写明，不得隐瞒或者欺骗。 劳动者在已订立劳动合同期间因工作岗位或者工作内容变更，从事与所订立劳动合同中未告知的存在职业病危害的作业时，用人单位应当依照前款规定，向劳动者履行如实告知的义务，并协商变更原劳动合同相关条款。 用人单位违反前两款规定的，劳动者有权拒绝从事存在职业病危害的作业，用人单位不得因此解除与劳动者所订立的劳动合同。 **第三十五条** 用人单位的主要负责人和职业卫生管理人员应当接受职业卫生培训，遵守职业病防治法律、法规，依法组织本单位的职业病防治工作。 用人单位应当对劳动者进行上岗前的职业卫生培训和在岗期间的定期职业卫生培训，普及职业卫生知识，督促劳动者遵守职业病防治法律、法规、规章和操作规程，指导劳动者正确使用职业病防护设备和个人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 劳动者应当学习和掌握相关的职业卫生知识，增强职业病防范意识，遵守职业病防治法律、法规、规章和操作规程，正确使用、维护职业病防护设备和个人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发现职业病危害事故隐患应当及时报告。 劳动者不履行前款规定义务的，用人单位应当对其进行教育。 **第三十六条** 对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的劳动者，用人单位应当按照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卫生行政部门的规定组织上岗前、在岗期间和离岗时的职业健康检查，并将检查结果书面告知劳动者。职业健康检查费用由用人单位承担。 用人单位不得安排未经上岗前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不得安排有职业禁忌的劳动者从事其所禁忌的作业；对在职业健康检查中发现有与所从事的职业相关的健康损害的劳动者，应当调离原工作岗位，并妥善安置；对未进行离岗前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不得解除或者终止与其订立的劳动合同。 职业健康检查应当由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批准的医疗卫生机构承担。 **第三十七条** 用人单位应当为劳动者建立职业健康监护档案，并按照规定的期限妥善保存。 职业健康监护档案应当包括劳动者的职业史、职业病危害接触史、职业健康检查结果和职业病诊疗等有关个人健康资料。 劳动者离开用人单位时，有权索取本人职业健康监护档案复印件，用人单位应当如实、无偿提供，并在所提供的复印件上签章。 **第三十八条** 发生或者可能发生急性职业病危害事故时，用人单位应当立即采取应急救援和控制措施，并及时报告所在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接到报告后，应当及时会同有关部门组织调查处理；必要时，可以采取临时控制措施。卫生行政部门应当组织做好医疗救治工作。 对遭受或者可能遭受急性职业病危害的劳动者，用人单位应当及时组织救治、进行健康检查和医学观察，所需费用由用人单位承担。 **第三十九条** 用人单位不得安排未成年工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不得安排孕期、哺乳期的女职工从事对本人和胎儿、婴儿有危害的作业。 **第四十条** 劳动者享有下列职业卫生保护权利： （一）获得职业卫生教育、培训； （二）获得职业健康检查、职业病诊疗、康复等职业病防治服务； （三）了解工作场所产生或者可能产生的职业病危害因素、危害后果和应当采取的职业病防护措施； （四）要求用人单位提供符合防治职业病要求的职业病防护设施和个人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改善工作条件； （五）对违反职业病防治法律、法规以及危及生命健康的行为提出批评、检举和控告； （六）拒绝违章指挥和强令进行没有职业病防护措施的作业； （七）参与用人单位职业卫生工作的民主管理，对职业病防治工作提出意见和建议。 用人单位应当保障劳动者行使前款所列权利。因劳动者依法行使正当权利而降低其工资、福利等待遇或者解除、终止与其订立的劳动合同的，其行为无效。 **第四十一条** 工会组织应当督促并协助用人单位开展职业卫生宣传教育和培训，有权对用人单位的职业病防治工作提出意见和建议，依法代表劳动者与用人单位签订劳动安全卫生专项集体合同，与用人单位就劳动者反映的有关职业病防治的问题进行协调并督促解决。 工会组织对用人单位违反职业病防治法律、法规，侵犯劳动者合法权益的行为，有权要求纠正；产生严重职业病危害时，有权要求采取防护措施，或者向政府有关部门建议采取强制性措施；发生职业病危害事故时，有权参与事故调查处理；发现危及劳动者生命健康的情形时，有权向用人单位建议组织劳动者撤离危险现场，用人单位应当立即作出处理。 **第四十二条** 用人单位按照职业病防治要求，用于预防和治理职业病危害、工作场所卫生检测、健康监护和职业卫生培训等费用，按照国家有关规定，在生产成本中据实列支。 **第四十三条** 职业卫生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对用人单位落实职业病防护管理措施情况的监督检查，依法行使职权，承担责任。**第四章 职业病诊断与职业病病人保障** **第四十四条** 医疗卫生机构承担职业病诊断，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批准。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向社会公布本行政区域内承担职业病诊断的医疗卫生机构的名单。 承担职业病诊断的医疗卫生机构应当具备下列条件： （一）持有《医疗机构执业许可证》； （二）具有与开展职业病诊断相适应的医疗卫生技术人员； （三）具有与开展职业病诊断相适应的仪器、设备； （四）具有健全的职业病诊断质量管理制度。 承担职业病诊断的医疗卫生机构不得拒绝劳动者进行职业病诊断的要求。 **第四十五条** 劳动者可以在用人单位所在地、本人户籍所在地或者经常居住地依法承担职业病诊断的医疗卫生机构进行职业病诊断。 **第四十六条** 职业病诊断标准和职业病诊断、鉴定办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职业病伤残等级的鉴定办法由国务院劳动保障行政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 **第四十七条** 职业病诊断，应当综合分析下列因素： （一）病人的职业史； （二）职业病危害接触史和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情况； （三）临床表现以及辅助检查结果等。 没有证据否定职业病危害因素与病人临床表现之间的必然联系的，应当诊断为职业病。 承担职业病诊断的医疗卫生机构在进行职业病诊断时，应当组织三名以上取得职业病诊断资格的执业医师集体诊断。 职业病诊断证明书应当由参与诊断的医师共同签署，并经承担职业病诊断的医疗卫生机构审核盖章。 **第四十八条** 用人单位应当如实提供职业病诊断、鉴定所需的劳动者职业史和职业病危害接触史、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等资料；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监督检查和督促用人单位提供上述资料；劳动者和有关机构也应当提供与职业病诊断、鉴定有关的资料。 职业病诊断、鉴定机构需要了解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情况时，可以对工作场所进行现场调查，也可以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在十日内组织现场调查。用人单位不得拒绝、阻挠。 **第四十九条** 职业病诊断、鉴定过程中，用人单位不提供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等资料的，诊断、鉴定机构应当结合劳动者的临床表现、辅助检查结果和劳动者的职业史、职业病危害接触史，并参考劳动者的自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供的日常监督检查信息等，作出职业病诊断、鉴定结论。 劳动者对用人单位提供的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等资料有异议，或者因劳动者的用人单位解散、破产，无用人单位提供上述资料的，诊断、鉴定机构应当提请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进行调查，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自接到申请之日起三十日内对存在异议的资料或者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情况作出判定；有关部门应当配合。 **第五十条** 职业病诊断、鉴定过程中，在确认劳动者职业史、职业病危害接触史时，当事人对劳动关系、工种、工作岗位或者在岗时间有争议的，可以向当地的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申请仲裁；接到申请的劳动人事争议仲裁委员会应当受理，并在三十日内作出裁决。 当事人在仲裁过程中对自己提出的主张，有责任提供证据。劳动者无法提供由用人单位掌握管理的与仲裁主张有关的证据的，仲裁庭应当要求用人单位在指定期限内提供；用人单位在指定期限内不提供的，应当承担不利后果。 劳动者对仲裁裁决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用人单位对仲裁裁决不服的，可以在职业病诊断、鉴定程序结束之日起十五日内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诉讼期间，劳动者的治疗费用按照职业病待遇规定的途径支付。 **第五十一条** 用人单位和医疗卫生机构发现职业病病人或者疑似职业病病人时，应当及时向所在地卫生行政部门和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报告。确诊为职业病的，用人单位还应当向所在地劳动保障行政部门报告。接到报告的部门应当依法作出处理。 **第五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职业病统计报告的管理工作，并按照规定上报。 **第五十三条** 当事人对职业病诊断有异议的，可以向作出诊断的医疗卫生机构所在地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申请鉴定。 职业病诊断争议由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根据当事人的申请，组织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进行鉴定。 当事人对设区的市级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的鉴定结论不服的，可以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申请再鉴定。 **第五十四条** 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由相关专业的专家组成。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设立相关的专家库，需要对职业病争议作出诊断鉴定时，由当事人或者当事人委托有关卫生行政部门从专家库中以随机抽取的方式确定参加诊断鉴定委员会的专家。 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应当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颁布的职业病诊断标准和职业病诊断、鉴定办法进行职业病诊断鉴定，向当事人出具职业病诊断鉴定书。职业病诊断、鉴定费用由用人单位承担。 **第五十五条** 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组成人员应当遵守职业道德，客观、公正地进行诊断鉴定，并承担相应的责任。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组成人员不得私下接触当事人，不得收受当事人的财物或者其他好处，与当事人有利害关系的，应当回避。 人民法院受理有关案件需要进行职业病鉴定时，应当从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依法设立的相关的专家库中选取参加鉴定的专家。 **第五十六条** 医疗卫生机构发现疑似职业病病人时，应当告知劳动者本人并及时通知用人单位。 用人单位应当及时安排对疑似职业病病人进行诊断；在疑似职业病病人诊断或者医学观察期间，不得解除或者终止与其订立的劳动合同。 疑似职业病病人在诊断、医学观察期间的费用，由用人单位承担。 **第五十七条** 用人单位应当保障职业病病人依法享受国家规定的职业病待遇。 用人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安排职业病病人进行治疗、康复和定期检查。 用人单位对不适宜继续从事原工作的职业病病人，应当调离原岗位，并妥善安置。 用人单位对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的劳动者，应当给予适当岗位津贴。 **第五十八条** 职业病病人的诊疗、康复费用，伤残以及丧失劳动能力的职业病病人的社会保障，按照国家有关工伤保险的规定执行。 **第五十九条** 职业病病人除依法享有工伤保险外，依照有关民事法律，尚有获得赔偿的权利的，有权向用人单位提出赔偿要求。 **第六十条** 劳动者被诊断患有职业病，但用人单位没有依法参加工伤保险的，其医疗和生活保障由该用人单位承担。 **第六十一条** 职业病病人变动工作单位，其依法享有的待遇不变。 用人单位在发生分立、合并、解散、破产等情形时，应当对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的劳动者进行健康检查，并按照国家有关规定妥善安置职业病病人。 **第六十二条** 用人单位已经不存在或者无法确认劳动关系的职业病病人，可以向地方人民政府民政部门申请医疗救助和生活等方面的救助。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本地区的实际情况，采取其他措施，使前款规定的职业病病人获得医疗救治。**第五章 监督检查** **第六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职业卫生监督管理部门依照职业病防治法律、法规、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依据职责划分，对职业病防治工作进行监督检查。 **第六十四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进入被检查单位和职业病危害现场，了解情况，调查取证； （二）查阅或者复制与违反职业病防治法律、法规的行为有关的资料和采集样品； （三）责令违反职业病防治法律、法规的单位和个人停止违法行为。 **第六十五条** 发生职业病危害事故或者有证据证明危害状态可能导致职业病危害事故发生时，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可以采取下列临时控制措施： （一）责令暂停导致职业病危害事故的作业； （二）封存造成职业病危害事故或者可能导致职业病危害事故发生的材料和设备； （三）组织控制职业病危害事故现场。 在职业病危害事故或者危害状态得到有效控制后，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解除控制措施。 **第六十六条** 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依法执行职务时，应当出示监督执法证件。 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应当忠于职守，秉公执法，严格遵守执法规范；涉及用人单位的秘密的，应当为其保密。 **第六十七条** 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依法执行职务时，被检查单位应当接受检查并予以支持配合，不得拒绝和阻碍。 **第六十八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及其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履行职责时，不得有下列行为： （一）对不符合法定条件的，发给建设项目有关证明文件、资质证明文件或者予以批准； （二）对已经取得有关证明文件的，不履行监督检查职责； （三）发现用人单位存在职业病危害的，可能造成职业病危害事故，不及时依法采取控制措施； （四）其他违反本法的行为。 **第六十九条** 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应当依法经过资格认定。 职业卫生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队伍建设，提高职业卫生监督执法人员的政治、业务素质，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建立、健全内部监督制度，对其工作人员执行法律、法规和遵守纪律的情况，进行监督检查。**第六章 法律责任** **第七十条** 建设单位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停建、关闭： （一）未按照规定进行职业病危害预评价或者未提交职业病危害预评价报告，或者职业病危害预评价报告未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审核同意，开工建设的； （二）建设项目的职业病防护设施未按照规定与主体工程同时投入生产和使用的； （三）职业病危害严重的建设项目，其职业病防护设施设计未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审查，或者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施工的； （四）未按照规定对职业病防护设施进行职业病危害控制效果评价、未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验收或者验收不合格，擅自投入使用的。  **第七十一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十万元以下的罚款： （一）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结果没有存档、上报、公布的； （二）未采取本法第二十一条规定的职业病防治管理措施的； （三）未按照规定公布有关职业病防治的规章制度、操作规程、职业病危害事故应急救援措施的； （四）未按照规定组织劳动者进行职业卫生培训，或者未对劳动者个人职业病防护采取指导、督促措施的； （五）国内首次使用或者首次进口与职业病危害有关的化学材料，未按照规定报送毒性鉴定资料以及经有关部门登记注册或者批准进口的文件的。 **第七十二条** 用人单位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规定及时、如实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申报产生职业病危害的项目的； （二）未实施由专人负责的职业病危害因素日常监测，或者监测系统不能正常监测的； （三）订立或者变更劳动合同时，未告知劳动者职业病危害真实情况的； （四）未按照规定组织职业健康检查、建立职业健康监护档案或者未将检查结果书面告知劳动者的； （五）未依照本法规定在劳动者离开用人单位时提供职业健康监护档案复印件的。 **第七十三条** 用人单位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 （一）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的强度或者浓度超过国家职业卫生标准的； （二）未提供职业病防护设施和个人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或者提供的职业病防护设施和个人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 （三）对职业病防护设备、应急救援设施和个人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未按照规定进行维护、检修、检测，或者不能保持正常运行、使用状态的； （四）未按照规定对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进行检测、评价的； （五）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经治理仍然达不到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时，未停止存在职业病危害因素的作业的； （六）未按照规定安排职业病病人、疑似职业病病人进行诊治的； （七）发生或者可能发生急性职业病危害事故时，未立即采取应急救援和控制措施或者未按照规定及时报告的； （八）未按照规定在产生严重职业病危害的作业岗位醒目位置设置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的； （九）拒绝职业卫生监督管理部门监督检查的； （十）隐瞒、伪造、篡改、毁损职业健康监护档案、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结果等相关资料，或者拒不提供职业病诊断、鉴定所需资料的； （十一）未按照规定承担职业病诊断、鉴定费用和职业病病人的医疗、生活保障费用的。 **第七十四条** 向用人单位提供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设备、材料，未按照规定提供中文说明书或者设置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五条** 用人单位和医疗卫生机构未按照规定报告职业病、疑似职业病的，由有关主管部门依据职责分工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一万元以下的罚款；弄虚作假的，并处二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处分。 **第七十六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治理，并处五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 （一）隐瞒技术、工艺、设备、材料所产生的职业病危害而采用的； （二）隐瞒本单位职业卫生真实情况的； （三）可能发生急性职业损伤的有毒、有害工作场所、放射工作场所或者放射性同位素的运输、贮存不符合本法第二十六条规定的； （四）使用国家明令禁止使用的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设备或者材料的； （五）将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转移给没有职业病防护条件的单位和个人，或者没有职业病防护条件的单位和个人接受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的； （六）擅自拆除、停止使用职业病防护设备或者应急救援设施的； （七）安排未经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有职业禁忌的劳动者、未成年工或者孕期、哺乳期女职工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禁忌作业的； （八）违章指挥和强令劳动者进行没有职业病防护措施的作业的。 **第七十七条** 生产、经营或者进口国家明令禁止使用的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设备或者材料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处罚。 **第七十八条** 用人单位违反本法规定，已经对劳动者生命健康造成严重损害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并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九条** 用人单位违反本法规定，造成重大职业病危害事故或者其他严重后果，构成犯罪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十条** 未取得职业卫生技术服务资质认可擅自从事职业卫生技术服务的，或者医疗卫生机构未经批准擅自从事职业健康检查、职业病诊断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卫生行政部门依据职责分工责令立即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五千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二倍以上十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五千元的，并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 **第八十一条** 从事职业卫生技术服务的机构和承担职业健康检查、职业病诊断的医疗卫生机构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卫生行政部门依据职责分工责令立即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五千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二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五千元的，并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认可或者批准机关取消其相应的资格；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超出资质认可或者批准范围从事职业卫生技术服务或者职业健康检查、职业病诊断的； （二）不按照本法规定履行法定职责的； （三）出具虚假证明文件的。 **第八十二条** 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组成人员收受职业病诊断争议当事人的财物或者其他好处的，给予警告，没收收受的财物，可以并处三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取消其担任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组成人员的资格，并从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设立的专家库中予以除名。 **第八十三条** 卫生行政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不按照规定报告职业病和职业病危害事故的，由上一级行政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虚报、瞒报的，对单位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处分。 **第八十四条** 违反本法第十七条、第十八条规定，有关部门擅自批准建设项目或者发放施工许可的，对该部门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监察机关或者上级机关依法给予记过直至开除的处分。 **第八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在职业病防治工作中未依照本法履行职责，本行政区域出现重大职业病危害事故、造成严重社会影响的，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处分。 县级以上人民政府职业卫生监督管理部门不履行本法规定的职责，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依法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或者降级的处分；造成职业病危害事故或者其他严重后果的，依法给予撤职或者开除的处分。 **第八十六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章 附 则** **第八十七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职业病危害，是指对从事职业活动的劳动者可能导致职业病的各种危害。职业病危害因素包括：职业活动中存在的各种有害的化学、物理、生物因素以及在作业过程中产生的其他职业有害因素。 职业禁忌，是指劳动者从事特定职业或者接触特定职业病危害因素时，比一般职业人群更易于遭受职业病危害和罹患职业病或者可能导致原有自身疾病病情加重，或者在从事作业过程中诱发可能导致对他人生命健康构成危险的疾病的个人特殊生理或者病理状态。 **第八十八条** 本法第二条规定的用人单位以外的单位，产生职业病危害的，其职业病防治活动可以参照本法执行。 劳务派遣用工单位应当履行本法规定的用人单位的义务。 中国人民解放军参照执行本法的办法，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制定。 **第八十九条** 对医疗机构放射性职业病危害控制的监督管理，由卫生行政部门依照本法的规定实施。 **第九十条** 本法自２００２年５月１日起施行。 |